

法的 根據 및 施行節次

- 법적 근거 :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
- 시행절차
 - 시장·군수가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 요청
(오염 총량 관리 계획 수립 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)
 - 환경부 장관은 국립 환경연구원장의 검토 및 한강 수계 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승인
 - 시장·군수는 승인 받은 오염총량관리 계획을 시행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

計劃 樹立 主體

- 경기도 광주시장

總量管理의 範圍

- 대상물질: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(BOD₅)
- 계획기간: 2003년~2007년 (5년간)
- 대상지역: 오염총량관리 지점인 서하보 상류의 경안천 유역 중 광주시 관할지역

總量管理 目標

- (1) 수질 목표
 - '07년까지 '98년 한강대책 수립시 설정한 경안천 하류 광동교 지점의 목표수질(3.69mg/ℓ)을 만족하는 오염총량관리지점 서하보의 평수기 수질 5.5mg/ℓ를 달성
 - 목표 수질은 경안천의 광주-용인 경계지점 수질이 5.5mg/ℓ로 유지됨을 전제로 설정
- (2) 오염원 관리목표
 - '07년까지 광주시 오염총량관리지역 내 인구증가를 연간 7.1% 이내로 관리(여유 부하량을 이용한 추가개발 제외)
 - 산업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 증가를 5.6%/년 이하로 관리
 -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 부하량을 '02년 수준이하로 유지
 -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부하 증가를 3.7%/년 이하로 관리
- (3) 부하량 관리목표
 - '07년 목표수질 5.5mg/ℓ을 달성하기 위해 서하보 상류유역의 배출 부하량을 3,012.4kg/일 (최대 허용부하량 3,146.3kg/일)

—경기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(요약본)—

汚染削減計劃

○ 목표수질 달성을 담보하고 최대한의 지역개발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오염원별 삭감 계획은 다음과 같음

(1) 생활계 오염원

- 하수처리장 36천톤/일을 확충하여 783.3kg/일 삭감
 - 하수처리율: 85.3%('02) → 96.7%('07)
 - 생활계 오염원의 BOD부하 처리율 : 83.0%('02) → 88.0%('07)
- 하수관거 정비(101km)를 통한 하수관거 누출을 저감(7%→5%) 효과로 245.3kg/일 삭감
- 하수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(BOD,10mg/ℓ→5mg/ℓ)로 285.0kg/일 삭감

(2) 산업계 오염원

- BOD부하처리율 : 98.1%('02) → 99.0%('07)
- 개별 폐수 배출시설의 발생 폐수 중 일부(1,163m³/일)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여 25.7kg/일 삭감

(3) 비점오염원

- 저류지 등 하천유역에 비점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27.0kg/일의 배출 부하량 삭감
 - 저류지 3개, 접촉산화시설 3개, 강우 유출수 처리장치 1개 등

삭감 방안	내 용	삭감량(kg/일)
하수처리장 확충	하수처리장 36천톤/일 확충	783.3
고도처리시설 도입	광주,경안,곤지암,도척,오포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(BOD기준 10mg/ℓ→5mg/ℓ)	285.0
하수 관거 정비	하수관거정비(101km)를 통한 하수 누출을 저감(7%→5%)	245.3
산업폐수 연계처리	개별 폐수 배출 시설에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실시	25.7
비점오염원 저감시설설치	경안천본류 등 5개 지점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	27.0
합계		1,366.3

開發計劃 및 負荷量 割當

(1) 기본적인 오염원 증가 수용

-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인구(3.3%/년)의 거주를 위한 주택, 도로 등 시설물 건설
- '02년말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(12,933세대)의 완료

- 기존 오염원(2,197.5kg/일)과 기본적인 오염원증가(479.7kg/일)에 총 2,677.2kg/일의 배출 부하량 할당

(2) 지역개발사업

- '03~'07기간 중 광주시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청사 이전, 터미널 신축 등 24개 지역개발사업에 80.3kg/일을 배출 부하량 할당
- 지역개발 사업중 실학박물관 증축 관련 사업은 총량관리대상지역외인 서하보 하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제외하였음

(3) 추가 개발사업 확보

- 기본 증가 및 지역개발·공공사업 이외의 여유 부하량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연차별, 지역별 사용 방안 결정(133.3kg/일 배출 부하량 할당)

- (4) 기타 사회적 증가등 예측치 못한 기본적 오염원 증가 및 지역 개발 사업(공공사업) 추진 등 탄력적 운영을 위해 13.7kg/일 할당 유보

投資計劃

- 하수처리장 건설, 하수 관거 정비,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삭감시설 및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에 총 1,672억원 투자

<오염총량관리를 위한 투자 계획>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합 계	'03	'04	'05	'06	'07
합 계	167,269	50,860	45,329	59,872	11,154	54
하수처리장	85,686	24,315	21,107	32,714	7,550	0
하수관거	71,935	25,149	23,234	23,552	0	0
비점오염저감	8,970	934	934	3,552	3,550	0
수질측정망	678	462	54	54	54	54

推進 方案

(1) 총량관리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

- 모든 오염원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총량관리 전담반 구성
 -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여 개발사업 및 오염삭감계획 추진 총괄
 - 치수과, 도시과, 주택과, 허가과 등 광주시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서에 임무를 부여하여 총량관리 업무 수행

(2) 이행 관리방안

- 지역별 배출 부하량 및 허용 부하량을 비교할 수 있는 오염총량 관리대장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분기 말에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
 - 단독 주택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허가시점에서 오염총량을 할당
 -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준공시점의 오염총량여부를 검토하고 준공시점의 예비 할당 부하량으로 관리
 - 하수처리구역 외에서 허가한 경우 실측치가 있는 경우 실측값에 의한 부하량을 산정하여 대장에 기록하되, 실측치가 없는 경우 오수·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부하량을 대장에 기록
 -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근생, 공장, 판매시설 등)에 대하여서는 하수 발생량 및 부하량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공공 및 지역개발사업 산정방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당 관리
- 연차별·지역별 할당 부하량 범위 안에서 허가하고 본 계획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개발에 의한 인구증가 연 3.3%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양만큼 본 계획에 제시된 개발계획을 축소하여 오염총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
- 서하보 지점의 수질을 연30회 이상 측정하여 수질목표 달성도 평가